

전주지방법원 2021. 2. 17 선고 2019나999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2. 17 선고 2019나9999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19. 10. 11 선고 2018가단2585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태희

변론 종결 2021. 1. 20

판결 선고 2021. 2. 17

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. 10. 11. 선고 2018가단2585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'45,057,000'을 '45,057,000원'으로 경정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55,635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. 18. 부터 2019. 7. 19. 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송달일까지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13행의 "2015. 3. 10."을 "2005. 3. 10."로 고치고, ② 제3면 제20행의 "2015. 2. 7.자 약정"을 "2005. 2. 7.자 약정"으로 고치며, ③ 제5면 제8행의 "2015. 2. 7.자 약정"을 n2005. 2. 7.자 약정"으로 고치고, ④ 제5면 제12행의 "207. 1. 18."을 "2017. 1. 18."로 고치며, ⑤ 제7면 제7행의 "45,057,000"을 "45,057,000원"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' 2. 추가판단'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토지 및 전북 완주군 N 답 56㎡(이하 '제2토지'라 한다) 중 각 3/10지분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제1내지 5토지 중 일부를 사용: 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
원고의 위지분이 전등 기의무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경매절차가 종결된 2020 . 9. 23. 경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69, 603, 000원이다.

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69, 603, 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5, 057, 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(이 사건 토지 중 3/ 10지분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)과 상계한다.

나. 판단

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2005. 3. 10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만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,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된 제1, 2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위와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장애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의 지분이 전등기 청구권은 제 1, 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2005 . 3. 10.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. 3. 10.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, 결국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, 그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기각하기로 하고,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창민판사 조지환판사 나상훈